### 교원산학연구학기제 규정

제정 2007. 12. 3 개정 2017. 6. 1 개정 2009. 4. 29 개정 2017. 7. 17 개정 2012. 3. 22 개정 2018. 10. 8 개정 2013. 10. 24 개정 2019. 6. 17 개정 2016. 3.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이하 본교) 교원들의 연구활동과 산학협력활동을 통하여 교수의 능력 배양을 통해 학교와 스쿨 발전에 기여하도록 시행하는 것으로 "교원산학연구학기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산학연구학기라 함은 본교에 일정기간 근속한 전임교원이 산학연구활동에 전념하는 기간을 말한다.
- ② 산학연구활동에는 전공능력향상을 위한 산업체연수, 예술작품활동, 연구 등을 말하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시행하는 교원산업체 연수과정을 포함한다.
- ③ 산학연구교원이라 함은 연구학기를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교원을 말한다.
- 제2조의2(교원산학연구학기제심의위원회) ①교원산학연구학기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총장의 자 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교원산학연구학기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다.
  - ②위원회는 교원인사위원회로 구성한다.
  -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교원산학연구학기제도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 2. 산학연구학기 대상자의 선정
  - 3.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 4.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 제3조(자격) ① 산학연구학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후 근속기간이 7년 이상인 교원으로 한다.
  - ② 산학연구학기를 2회 이상 부여받을 수 있는 자격은 전회 연구학기가 종료된 후 휴직 기간을 제외한 전 근속기간이 최소한 6년 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 ③ 산학연구학기 시작일 기준으로 정년퇴직시까지의 잔여 재직년수가 4년 미만인 교원에게는 산학연구학기를 부여 하지 아니한다.
- 제4조(기간 등) ① 산학연구학기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최소 16주이상 연속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17.6.1. 개정)

- ② 산학연구학기 기간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할 수 있다.
- ③ 산학연구학기는 재직기간 중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조(신청절차) 산학연구학기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산학 연구를 실시하는 학기에 관계없이 실시 학년도 개시 3개월 이전에 소속 스쿨원장을 경유하여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산학연구학기 신청서 (별표 1)
  - 2. 산학연구학기 기간 중 산학연구계획서 (별표 2)
  - 3. 업체에서 연수 및 과제 수행시 업체의 동의서 (별표 3)
  - 4. 스쿨 원장 추천서(별표 4)
- 제6조(선정절차) ① 산학연구학기 대상 교원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최종 결정한다.
  - ②담당부서장은 신청서의 접수를 마감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 하여야 한다.
  - ③위원회는 심의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위원장은 그 결과를 즉시 서면으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총장은 심의결과를 교무위원회 회의에서 논의, 검토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 ⑤산학연구학기 대상 교원 선정은 산학연구학기 실시 학년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신청교원 및 소속 스쿨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선정기준) 산학연구교원을 선정하는 데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7)
  - ① 산학연구과제 설정의 목적 및 필요성(산업체 동향에의 적합성 여부, 담당교과목 적합성 여부)
  - ② 과제 수행기관의 적합성
  - ③ 목적한 성과를 얻기 위한 내용 및 방법의 적합성
  - ④ 연구결과물의 활용방안(학교와 스쿨의 발전을 중심으로)
  - ⑤ 교원업적평가 결과
  - ⑥ 본교 발전에 기여도
  - ⑦ 스쿨원장 추천서 등
- 제7조의2(특별지정) ①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신설전공 개설 준비 및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할 경우 해당교원을 특별지정하여 산학연구학기제를 시행할 수 있으며, 「제3조(자격), 제5조(신청 절차), 제6조(선정절차), 제7조(선정기준)」 적용은 예외로 한다.
  - ② 이외에 특별지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017.7.17. 신설)
- 제8조(인원의 제한) 산학연구학기를 부여하는 인원은 매 회 전체 전임교원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 제9조(목적변경 및 과제변경) ① 산학연구학기를 부여받은 교원의 연구학기 목적 및 연구과제는 신청 당시와 동일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의 연

구(목적/과제)변경신청서(별표 5)를 작성하여 사유발생 즉시 소속 스쿨원장과 담당부서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산학연구학기의 연구목적(과제)의 변경은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거쳐 이를 허가한다.
- 제10조(취소) ① 허가받은 연구학기 기간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의 연구학기 취소신청서 (별표 6)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② 산학연구학기 개시일 이후에 취소할 경우에는 산학연구학기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11조(산학연구교원의 처우) ① 산학연구교원은 산학연구학기 기간 중 우리대학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한다.
  - ② 산학연구교원에게는 산학연구학기 개시일 기준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단, 학생지도비 등은 제외)
  - ③ 산학연구학기 기간은 재직년수에 포함되나 승진 소요 연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④ 산학연구학기 당해년도의 업적평가는 당해연도 재직기간의 업적과 산학연구학기결과보고서 평가 (별표 8)점수를 업적평가에 반영하며,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 ⑤ 총장은 산학연구학기 수행 교원에게 연구활동 증진을 위한 특별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의무) ①산학연구교원은 약정된 산학연구학기 기간 종료 후 즉시 우리대학에 복귀하여야 한다.
  - ② 산학연구교원은 복귀 후 늦어도 1개월 이내에 소속 스쿨원장을 경유하여 담당부서장 및 총장에 게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1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 ③ 산학연구교원은 복귀 후 3년 동안 우리대학에 근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산학연구학기 기간 동안의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단, 학교 규정에 의해 징계, 해임, 재임용 탈락, 질 병으로 인한 퇴직 등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④ 산학연구학기 기간 동안 교원은 타 대학 출강 및 타 기관의 근무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 시 즉시 대학에 복귀하도록 한다. 단, 산업체 연수를 위하여 근무하는 것은 허용한다.
  - ⑤ 산학연구학기 기간 동안 사업체 운영, 보수를 받는 타 기관 근무, 작품 판매를 목적으로 한 활동 등의 영리활동은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⑥ 산학연구교원은 산학연구학기 기간 동안 제도의 목적과 본인이 설정한 목표에 부합하도록 성실하게 과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⑦ 1항에서 6항까지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향후 산학연구학기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 ⑧ 담당부서장은 산학연구교원이 산학연구학기 중이나 종료 후에 산학연구학기제의 취지를 훼손하였거나 계획서에 기술된 내용에서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판단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내용을 심의하여 향후 산학연구학기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 제 13조(교원연구학기제심의위원회) (삭제)
- 제 14조(구성) (삭제)
- 제 15조(기능) (삭제)

제 16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본 규정은 2007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단, 최초 시행 학기에는 제5조 내지 제6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총장 명칭변경은 고등교육법 개정 시부터 변경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신청 및 선정 절차를 학기단위에서 학년도 단위로 변경함에 따라 2012학년도의 경우 예외일정으로 추가 신청 및 선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연구결과보고서의 업적평가 반영은 2014학년도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재직기간의 업적과 연구결과보고서의 업적평가 반영은 2017학년도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10월 8일부로 개정하며, 2018학년도 2학기 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교원산학연구학기제 신청서

소속학과						성	명		
임용일자						직	위		
산학 연구학기 신청기간		년	월	Ó	밀부터		년	월	일까지
주요 과제									
산학연구학기 기간 중 담당과목 등에 대한 의견									
본교 및 스쿨 발전에 기여한 실적									
첨 부	<ol> <li>연구계획서</li> <li>기타 첨부서취</li> </ol>	7							

교원산학연구학기 제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스쿨원장 (인)

### (별표 2)

## 교원산학연구학기 계획서

	소속 :	성 명 :	(인)
1. 주요과제명			

- 2. 과제설정의 목적 및 필요성
  - 1) 목적
  - 2) 필요성
  - 3) 산업체 동향 및 담당교과목과의 연계성
- 3. 과제 수행 기관, 내용 및 방법(개요)
  - 1) 수행기관
  - 2) 주요내용
  - 3) 방 법
- 4. 과제 수행 일정 및 세부계획
- 5. 기대되는 성과 및 활용방안
- 6. 기타

(별표 3)

# 동 의 서

성 명:

생년월일:

상기자가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산학연구학기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본 업체에서 연수를 실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1. 기간 :
- 2. 주요 내용 :

20 년 월 일

- 업체명 :
- 사업자등록증번호 :
- 대표자 : (서명)
- 주 소:
- 전화번호 :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총장 귀하

### (별표 4)

### 산학연구학기 스쿨원장 추천서

	산막선구막기 스물원장 구선적
연구자 소속 스쿨	연구자 성 명
허가받은 연구학기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학교와 스쿨에 예상	되는 기여도를 중심으로 상세 기록,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사용)
위와 같은 사유로	산학연구학기를 추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스쿨원장 (인)

## (별표 5)

# 교원산학연구학기제 연구과제 변경신청서

소 속 스 쿨	성명
허가받은 연구학기 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개월)
연구과제 변경사항	당 초:
	변 경:
변 경 사 유	
위와 같이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스쿨원장 (인)
첨 부	1. 연구계획서 2. 기타 첨부서류

### (별표 6)

# 교원산학연구학기제 취소 신청서

소속스쿨		성 명
허가받은 연구학기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취소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 산학연구학기를 취소하고자 ㅎ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	월 일
	신 청 인	(인)
	스쿨원장	(인)

### (별표 7)

## 교원산학연구학기제 결과보고서

소속스쿨					성	명		
연구학기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주 요 과 제								
과제추진 실적 및 결과								
결과의 활용성								
참고 및 건의사항								
첨 부	1. 결과물 1부	₽.						

위와 같이 교원산학연구학기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인)

스쿨원장 (인)

(별표 8)

#### 교원산학연구학기제 심의위원회 평가표

신청자: (소속) (직급) (임용일) . . . (근속년수) 년 개월

펴 기 하 모		평 가 점 수							
	평 가 항 목	5	4	3	2	1	비고		
1.	과제 설정의 목적 및 필요성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 목적 및 필요성								
	2) 계획의 적절성 (산업체 동향 및 담당교과목과의 적합성)								
	3) 계획의 구체성 (달성 가능성)								
2.	산학연구활동 수행능력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 수행기관의 적합성								
	2) 기대성과								
	3) 활용방안								
3.	업적평가 실적 (1000점 만점 기준)	850점 이상	800점 이상	750점 이상	700점 이상	700점 미만			
	1) 최근 7년간 평균								
	2) 최근 2년간 평균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4.	본교 발전에의 기여도								
Г	<u> </u>	매우 확실	확실	보통	미흡	매우미흡			
5.	스쿨원장 추천 사유								
	점 수 계				점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20 년 월 일

평가위원: (인)

교원산학연구학기제 심의위원장 귀하

(별표 9)

### 교원산학연구학기제 연구결과보고서 평가표

신청자: (소속) (직급) (연구학기기간) 20 . . . ~ 20 . . . (수행기관)

평 가 항 목 		평 가 점 수					
등 기 등 축 	5	4	3	2	1	비고	
1. 결과물의 효용성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 연구과제 목적을 달성 하였는가?							
2) 결과물이 관련 산업체 동향에 부합하는가?							
3) 결과물이 담당 교과목과의 연계성은 있는가?							
2. 과제 수행 기관, 내용 및 방법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 기관선정은 적절하여 과제수행에 도움을 주었는가?							
2) 목적한 성과를 위해 과제수행 내용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었는가?							
3) 목적한 성과를 위해 과제수행 방법은 적합하였는가?							
3. 성과 및 활용 방안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 결과물이 목적한 성과를 충분히 담고 있는가?							
2) 결과물이 담당교과목에 적용/활용이 가능한가?							
4. 기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 결과물의 형식이 적절한가?							
2) 결과물을 기한 내에 제출하였는가?	10일 이내	15일 이내	20일 이내	25일 이내	30일 이내		
점수 계		점					
※ 연구결과물을 복귀 후 1개월이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 5점 감점한다.		총		점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20 년 월 일

평가위원 : (인)

교원업적평가위원장 귀하